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수용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안 제33조, 별표6~10, 별표13, 별표19)

-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용적을 완화

(안 제64조 제5항 신설)

나.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행령에 따름(안 제19조)

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있어 조림일 규정 삭제, 입목축척, 기준지반고의 정의를 재설정하고, 경사도 별표 규정 삭제

(안 제22조, 별표25)

라. 분할제한면적은 건축법 상 분할제한면적에 따르며, 재분할에 대한 경과년수 등을 기획부동산에 한하여 제한

(안 제26조, 별표26)

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설치 완화(안 제33조, 별표4)

바. 준주거지역내에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거리 10m 이외 지역 가능(안 제33조, 별표6)

사.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거리 10m 이외 지역 가능(안 제33조, 별표7~9)

아. 자연취락지구에서 건폐율을 60퍼센트로하고, 종교시설 가능 완화
(안 제60조, 안 제33조, 별표22)

자.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제한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운동시설 가능 완화(안 제51조)

차.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을 400퍼센트로 완화(안 제64조)

카. 위원회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회의록의 경우 30일 이후 공개
(안 제71조, 안 제75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3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을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44조제5항”을 “법 제4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39조제7항의”를 “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단 녹지지역일 경우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일 것.

제22조제1항제3호 중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를 “허가대상지의 경사가 시작되는 산자락 등의 낮은 평지 또는 허가대상지”로, “읍·면·동 자연부락의 마을회관(노인정을 포함) 대지”를 “도시계획도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를 “지구단위계획구역외”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제2호”를 “별표 1의2 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으로 한다.

제33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9호 중 “수 있”을 각각 “수 없”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을 “수변경관지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호 중 “제1종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종수변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50조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51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52조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호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3조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4조”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3호 중 “300퍼센트”를 “4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기부하는 시설의 추가 건축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용적율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 한도
제67조의2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5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57조”로, “제28조의3”을 “제35조”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회에 한하여 심의나 자문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 중 “90일”을 “30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4까지, 별표 26은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25는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별표 3】 <개정 2013.6.5>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층수 제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

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층수 제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2013.6.5>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신설 2013.6.5>

【별표 4】 <개정 2013.6.5>

제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2013.6.5>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에서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 및 주차장,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신설 2013.6.5>

【별표 5】 <개정 2013.6.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개정 2013.6.5>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차고에 한한다)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신설 2013.6.5>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호 다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 4 자목의 공장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같은호 아목(차고에 한함)에 해당하는 시설과 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호 사목 및 아목 시설 제외)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제외)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외)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호 나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

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 1. 영 별표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 1. 영 별표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

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시설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 및 시내버스 차고지 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단, 안마

시술소·안마원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 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1. 영 별표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동호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제외 및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호 다목, 라목, 사목 및 아목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도시가스

- 배관시설 제외)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개정 2013.6.5>

생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개정 2013.6.5>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3.6.5>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3.6.5>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에까지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다목적 및 라목적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개정 2013.6.5>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아목적 및 자목적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13.6.5>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3.6.5>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 사목(지역아동센터 제외)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개정 2013.6.5>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3.6.5>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3.6.5>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에서 제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단,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휴게음식점·제과점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단, 해당용으로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은 제외)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동호 가목, 나목, 라목,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별표 20】 <개정 2013.6.5>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 제외)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 제외)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개정 2013.8.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13.6.5>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개정 2013.8.7>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13.6.5>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3】 <개정 2013.6.5>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1. 영 별표2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다) <개정 2013.6.5>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13.6.5>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3.6.5>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삭제>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3.6.5>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4】 (신설 2011.11.30)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필요사항 (제29조제4항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최대 개발행위 가능 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개발행위 면적 기준)
자연녹지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30미터 이내	5만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 미터 이내	건축물의 진입도로 - 5천제곱 미터 미만 : 도로폭 8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도로폭 10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이상 : 도로폭 12미터 이상
계획관리 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30미터 이내	6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 미터 이내	

비고)

1. 거리에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2. 동 조례 공포 이후 최대개발행위가능면적 산정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공사 진행 중이거나 허가를 위하여 접수된 토지는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므로 주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상·하수도 설비가 완료된 지역으로 한다.

【별표 25】 (삭제)

【별표 26】

토지분할 허가기준(제26조제2호 관련)

1. (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거나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3.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기획부동산이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4. (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교통부장관</u>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 <u>국토교통부장관</u> ----- ----- ----- ----- -----.
제10조(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 ----- ----- ----- ----- <u>제18조</u>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u>건설교통부장관</u> 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11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 ----- <u>국토교통부장관</u> ----- -----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 10. (생략)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현행과 같음)

2. ----- 제42조의2 제2 항 제4호에 따른 별도-----

3. ~ 10. (현행과 같음)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 제3항-----

-----.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별 제44조의2--- -----

-----.

<삭제>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 14조제 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0
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
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
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
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

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
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마. 삭 제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
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
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
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다. 농지안에서 객토를 위한
토사의 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
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
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
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
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
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
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
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
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
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
는 행위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은 우리시의 헥타아
르당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
트 미만일 것. 다만, 조림된 임
야는 조림일로부터 5년 이내
를 100퍼센트로 본다.

2. (생 략)

3. 기준지반고에서 60미터 이하
인 토지(“기준지반고”라 함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
지에서 가장 가까운 읍·면·
동 자연부락의 마을회관(노인
정을 포함) 대지의 표고를 말
한다)

4. 경사도는 별표 25에 따라 사
업지내 자연상태의 최저지반
고와 최고지반고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경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
용한다. 단 녹지지역일 경우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
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일 것.

2. (현행과 같음)

3. -----

허가대상지의 경사가 시작되
는 산자락 등의 낮은 평지 또
는 허가대상지-- 도시계획도
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

<삭 제>

경사면을 기준으로 한다.

② (생략)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 가목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
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별표 1의2 -----

1. -----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 할 수 있다.

2. 3. (생략)

4.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

----- 지구
단위계획구역-----

-----.

2. 3. (현행과 같음)

4. ----- 지구단위계획
구역외-----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별표 1의2 -----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6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생략)

제33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별표 1의2 제2호다목-----

-----.

1. ~ 4. (현행과 같음)

제26조(토지분할) -----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

2. (현행과 같음)

제33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 12. (생략)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 23. (생략)

제34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

6. ----- 수
없-----.

7. -----
수 없-----
--.

8. -----
수 없-----
--.

9. -----
수 없-----
--.

10. -----
- 수 없-----
-----.

11. · 12. (현행과 같음)

13. -----
수 없-----
---.

14. ~ 18. (현행과 같음)

19. -----
- 수 없-----
-----.

20. ~ 23. (현행과 같음)

제34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
도제한) -----
----- 자연경관지구안-----

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5. (생략)

제35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
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
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
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1. ~ 13. (현행과 같음)

14. -----
-----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현행과 같음)

<삭 제>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
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
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
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
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생략)

제37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제36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 수변경관지구안-----

-----.

1. ~ 15. (현행과 같음)
16. -----
----- 자원순환 관련시설

17. (현행과 같음)

<삭제>

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
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
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
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
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생략)

제39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자원순환 관련시설
7. (현행과 같음)

<삭 제>

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 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0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삭 제>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
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
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
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
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
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
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
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
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
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
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
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
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
미터 이하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
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
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자연경관지구-----

<삭 제>

3. 수변경관지구-----

<삭 제>

<삭 제>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
한) ① -----

-----.

1. ~ 9. (생 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u>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u> 11.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1. (생 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u>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u> 13. · 14. (생 략) 제5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u>근린생활시설</u> (바목, 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u>근린생활시설</u>	1. ~ 9. (현행과 같음) 10. ----- ----- <u>자원순환 관련시설</u>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u>자원순환 관련시설</u> 13. · 14. (현행과 같음) 제5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 <u>근린생활시설</u>
--	---

5. ~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u>의료시설</u> 10.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u>운동시설</u> 14. ~ 20. (생략)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u>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u> 22. ~ 24. (생략) 제52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 7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 31조제 2항 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u>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u> 14. · 15. (생략) 제5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 82조의 규정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에 한한다) 5. ~ 8. (현행과 같음) 9. ----- ----- <u>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한한다)</u> 10. ~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 20. (현행과 같음) 21. ----- ----- <u>자원순환 관련시설</u> 22. ~ 24. (현행과 같음) 제52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u>자원순환 관련시설</u> 14. · 15. (현행과 같음) <삭제>
---	---

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
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7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
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
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

<삭 제>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생 략)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생 략)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제8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
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 4. (생 략)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
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
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

-----.

<삭 제>

<삭 제>

<삭 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7. (현행과 같음)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1. ----- 60퍼센트 ---

2.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조제8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
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

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2. (생 략)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 21.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제67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

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400퍼센트

14. ~ 2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기부하는 시설의 추가 건축 허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용적율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 한도

제67조의2(등록문화재인 건축물

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회의운영) ①·② (생략)

③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 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생략)

②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7조 ----- 제35조-----

-----.

제71조(회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회에 한하여 심의나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30일-----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 4.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시행일:2014.7.15] 제71조제1항제6호, 제71조제1항제7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제71조제1항제13호,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12. (생략)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 21. (생략)

② ~ ⑨ (생략)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1.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 바. (생략)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자. (생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5) (생략)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 더. (생략)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생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
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
지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
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나.(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
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 차. (생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 아. (생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
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
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 자. (생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
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
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다. (생략)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 차. (생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 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생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마. (생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 거. (생략)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라.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 자. (생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생략)

카. ~ 파. (생략)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마. (생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 아. (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 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4) (생략)

차. ~ 너. (생략)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생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

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개정 2014.11.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 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

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종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

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가. 제4호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과 실·과		도 시 과
입 안 자	과 장	박 희 철
	담 당	전 환 엽
	담 당 자	장 봉 섭 (480-5402)